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 협약

수출관련물질 정보 수입국에 제공후 승인 얻어야
대상물질 대부분 사용금지, 국내적 영향 크지 않을듯



이상재

농림부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최근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지구환경논의가 각종 국제기구 및 국제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각 분야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

제협약 등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 속에는 지구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그 가운데서 유독화학물질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98년도에 채택된 사전통보승인(PIC) 협약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협약을 들 수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농약 및 유해화학물

질이 개발도상국 등에 무분별하게 수출입됨으로써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세계적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PIC 협약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알아본다.

PIC 협약이란?

PIC(Prior Informed Consent ; 사전통보승인) 협약이란 특정 농약 및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한 후 수입국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은 후 수출입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농약 등의 국가간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협약을 위한 논의는 그간 런던가이드라인과 농약의 사용 및 유통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에 따라 시행되어 오던 기존의 자발적인 수출전 통보승인 절차를 강제 규범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96년부터 UNEP와 FAO에 의해 공동으로 5차례의 열띤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후 지난 98년 3월에 협약문안에 대한 최종타결을 보게되었다. 현재 이 협약은 99년 9월까지 UN본부에 기탁되어 각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국내 이행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서명할 예정이다.

이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 등 위해성 관리능력이 부족한 수입국은 자국이 원하지 않거나 아직 유해성 관리능력이 부족한 농약의 수

입을 거부할 수 있고 또 필요 한 농약은 그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수출국은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라벨링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농약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수입국과 수출국은 유해농약으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을 공동으로 예방하고 또 같이 책임을 지는 잇점을 지니고 있다.

대상물질은?

이 협약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자발적인 PIC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27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화학물질이 추가될 전망이다.

PIC 협약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첫째로 당사국이 자국에서 인체건강 및 환경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거나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banned or severely restricted chemicals)과 둘째로 개도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해성 농약제재

(severely hazardous pesticide formulation)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상물질 가운데서 사무국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사국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농약제재를 PIC 대상물질로 추가지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마약, 의약품, 방사성 물질, 화학무기 등 일부 특정 화학물질은 이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험용 또는 분석을 목적으로 특정화학물질을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양만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PIC 절차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회원국에게 특정농약 및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그 농약이 선진국에서 왜 금지되었고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공하여 주는데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바 “결정안내자료(Decision Guidance Documents)의 형태로 만들어져 각국의 담당기관(DNAs)에 배포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국, 특히 수입국은 대상농약



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여 이를 수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의 내용에는 수입허용, 수입거부 또는 특정 조건하에서 수입허용 등으로 나누진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정보 및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 할 수도 있다.

각 회원국이 내린 이러한 수입여부 결정사항은 FAO/UNEP 사무국에 의해 정리되어 각국의 담당기관에 매 6개 월마다 제공하기로 되어있다.

회원국의 주요 의무사항은?

수입국은 PIC 절차상 주고 받는 모든 통보 및 회신내용을 정기적으로 수입관리기관(세관당국 등)과 수입업자 및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아울러 수입여부 결정사항을 모든 수출국 및 농약 제조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즉, 수입금지키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생산해서는 안된다.

수출국의 경우에도 수입국의 승인없이 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입국에 등록된 농약제제이거나 이때까지 특정 수입국에 계속 수출해온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있다.

또한, 수입국이 내린 수입여부 결정사항은 즉시 수출자, 유관기업 및 기타 관련기관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수출자가 이러한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수입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수출국으로서 96년 3월이

래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 회의에 참가하여 PIC 협약이 부당하게 국제적인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수입국의 환경과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우리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약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PIC 절차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현재 PIC 대상으로 되어있는 농약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PIC 협약화에 따른 국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로이 PIC 대상물질 리스트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물질중 농약은 값이 싸고 농민의 기호도가 높아 이를 규제할 경우 국내 농약산업 및 농약가격 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PIC 협약에 비준하여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등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농약관리법, 농약수출승인요령 등 국내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하겠다. **농약정보**

우리나라는 이미 농약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PIC 절차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현재 PIC 대상으로 되어있는 농약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PIC 협약화에 따른 국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